

제3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8.09.07(금)14:00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 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 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8월 28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31일

3. 제안 이유

- 농·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설치·운영중인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함으로써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(안 제12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농·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설치·운영중인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함으로써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.